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첨단산업도시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총괄사항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목표, 적용범위
- 주체별 책무 (안 제5조 및 제6조)
 - 국제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 외국인에 대한 시책 강구를 시의 책무로 규정
 - 시민의 책무는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

○ 제2장 국제화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계획수립 및 시책반영 (안 제7조 및 제8조)
 - 국제화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 국제 관련 시책 발굴·반영
- 시책추진 (안 제9조 및 제10조)
 - 국제 협력기구 가입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대회의 적극적인 유치
- 국제교류사업 (안 제11조 및 제12조)
 -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시 지원
 -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위탁
- 국제교류센터 등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운영 규정 및 기능
 - 국제교류의 날 제정·운영
 - 국제화 촉진 관련 공적자에 대한 포상

○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 자매도시 등(안 제16조)
 -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지정 교류
-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안 제17조)
 -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여건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
 - 국내도시 수는 7개 이내, 국외 10개 이내
- 자매결연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자매결연의 제의 시 지역여건 등 검토
 - 사전교류를 통한 여건 조성 후 자매결연
 - 자매결연의 체결, 변경 시 의회 동의
 - 자매결연 체결, 상호 호혜주의

- 사후관리(안 제22조 및 제23조)
 - 자매결연 관련 중요문서 영구보존
 - 의회 동의 후 자매결연 취소

○ 제4장 국제화추진협의회

- 총괄사항 (안 제24조 및 제25조)
 - 국제화추진협의회 목적, 기능
- 협의회 구성 및 위원 해촉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호선
 - 위촉 또는 임명 위원 구성 및 위원 임기(2년)
 - 위원 사망 등 사유 시 해촉
 - 위원장 직무, 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 직무 대행
- 회의 (안 제29조 및 제30조)
 - 연 1회 정기회의,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운영
- 협의조정사항 등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협의회 심의 조정사항에 대해 시책 반영
 - 자료 제공 협조
 - 공청회 등 개최
- 기타사항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 회의 참가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 협의회 운영세칙,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행

○ 부칙

○ 다른 조례 폐지

-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및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

○ 적용례

- 자매도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기존 조례 적용 간주

4. 참고사항

○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은

- 기본목표의 설정(안 제3조)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등 4가지 기본 목표를 정함

- 주체별 책무(안 제5조~제6조)

구미시와 시민의 책무를 명시함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

- **시책의 반영(안 제8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과 각종 관련계획 수립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반영토록 함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안 제9조)**

국제 지자체간 협력 및 연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국제 협력 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대회의 유치(안 제10조)**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되 국제대회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민간 교류사업의 지원 및 위탁(안 제11조~제12조)**

민간차원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시함

- **국제교류센터의 설치 근거(안 제13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의 선정·운영(안 제16조~제23조)**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와 내실화 방안 강구 등을 명시함

-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24조~제35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민·관·산·학 각 분야별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제반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 1995. 01. 01 조례 제0021호)와 「구미시와 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 1999. 01. 18 조례 제0344호)를 폐지하고 마련된 조례안으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하여 우리시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제화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시는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매년도별 시행사항을 점검하여 단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